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(대통령령 제00000호, 2000. 00. 00. 공포·시행),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.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00. 00. ~ 00. 00.)

##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사업주는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사업주는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행   | 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안   |
|---|--|
| <p>제11조(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)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| <p>제11조(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사업주는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</p> |
| <p>제23조(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)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  | <p>제23조(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사업주는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</p>  |